KiRi Weekly 2016.3.21.
이슈 분석

IFRS4 2단계 결정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도입 시 회계단위 확대, 계약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측정 등을 허용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사항을 발표함. 이번 결정으로 IFRS4 2단계 도입 시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7~20조 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번 IASB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할인율이 급락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도입 시 회계단위확대, 계약서비스마진(CSM)[1] 공정가치측정 등을 허용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2]의 결정사항을 발표함.[3]
  - 회계단위 확대: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이 어느 정도 통합 가능하도록 완화된 회계단위 원칙 제시
  - 계약서비스마진 공정가치측정: IFRS4 2단계 도입 시 회계기준의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한 계약서비스마진 측정 허용

- 이번 결정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IFRS4 2단계 도입 시 보험부채 증가 폭이 줄어들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회계단위 확대는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상계하는 계약의 범위를 넓혀 보험부채의 크기를 줄임.
    - 예를 들어, 유배당계약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는 경우, 회계단위를 유배당 금리확정형과 유배당 금리연동형으로 나누는 경우에 비해 장래손실(금리확정형 상품)과 장래이익(금리연동형 상품)이 서로 상계되어 보험부채가 줄어듦.

1)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총이익을 의미함.
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3) 전환시점의 현행 할인율 적용도 허용함. 이는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고 금리변동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도입 이후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IFRS4 2단계 최초 전환 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계약서비스마진 공정가치측정은 계약서비스마진 자체를 줄여 결과적으로 IFRS4 2단계 도입 시 자본 감소 폭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보임.
  - IFRS4 2단계는 미래 손실은 즉시 자본을 감소시키는 반면, 미래 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은 부채로 인식되어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최초 전환 시 부채비율 증가
  - 계약서비스마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도입 시점에서 신계약 마진율 적용으로 소급법(과거 고금리 시절의 높은 이익률 적용)에 비해 부채로 인식되는 계약서비스마진 규모가 축소

■ 이번 결정사항으로 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생보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7~20조 원으로 추정되며 동 수준은 초안 적용에 따른 44조 원 수준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그림 1〉 참조).

- 동 수치는 회계단위 및 계약서비스마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토대로 추정됨.
  - 회계단위 확대: 회계단위를 유배당, 무배당, 변액으로만 구분된다고 가정
  - CSM 공정가치측정: LAT[4] 평가이익의 50%, 75%라고 각각 가정
- 이에 반해, 초안에서 추정된 14조 원은 현행 LAT 포트폴리오 구분(유/무배당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연동형, 변액)을 사용하고 계약서비스마진은 LAT 평가이익과 같다고 가정

〈그림 1〉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본의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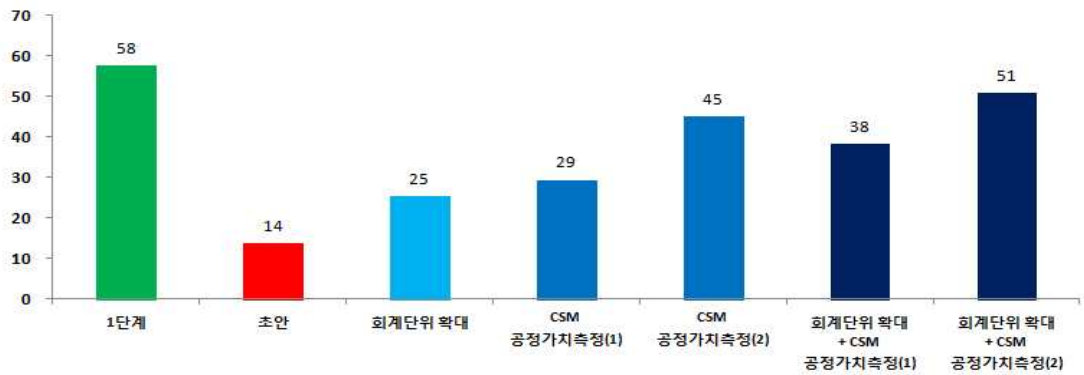

■ 그러나 이번 IASB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IFRS4 2단계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초로 한 현행 LAT 할인율보다 낮아 무위험 수익률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iri

4) LAT(Liability Adequacy Test)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로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출 · 유입액을 현재 가치화하여 보험계약 판매 당시 기초가정으로 적립한 장부상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임.